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법률 제11616호, 2013.1.1.)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나. 포상금 지급 관련 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
- 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 라.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마.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제9조)
- 바. 포상금 환수 등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
 - ※ 도 세무회계과-5161호(2013. 3. 4) 지방세포상금 조례관련 회의결과통보(표준안)
- 나. 예산조치 : 본예산 계상(4,800천원)
- 다. 협 의 : 예산담당 협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09.25. ~ 2014.10.15.)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협의(비행정규제)
 - 3) 비용추계서 : 불임(또는 미첨부 사유서)
 - 4) 성별영향평가분석 : 불임
 - 5) 관련법령 발췌문 : 불임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군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군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임실군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지급한도내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소관업무 관련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세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 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주 소 :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탈루 물건 등 소재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성 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radio"/> 전화번호 : <input type="radio"/> 주 소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					
제보자 (인)					
임실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신고자 (인)						
임실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호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서	
	신고내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청 신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용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 7 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임실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 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수신 : 임실군수

참조 : 재무과장

발신 :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채납액 징수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별지 제5호 서식 부표1)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임실군수

참조 : 재무과장

(금액: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1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채납액 징수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1부.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과세 년도	체 납			징 수			포 상 금		
	성 명	주민 번호	세목	징수액	징수일	공적내용	신청액	지급율	사유

징수자 : (인)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과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예상액의 3%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1년 예산액이 4,800천원으로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규정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생략함.

4. 작성자

재무과장 박상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47		
정책명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정선	전화번호 063-640-2204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부군수와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임. ■ 당연직 외 3명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함.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p>[개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들의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할 경우 임실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본청에 2인으로 성별 참여 자체를 제약하는 규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6급 이상” 또는 “5급 또는 5급에 상응하는”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소관업무 관련 6급이상’으로 수정 		
<p>2014년 10월 31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재무과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